

4.2.9 직원승진세칙

제정 1995. 12. 09.

개정 2002. 01. 23.

개정 2003. 04. 11.

개정 2022. 02. 24.

제1조(목적) 이 시행 세칙은 직원인사규정 제5장 제19조에 따라 승진세부내용에 관한 별도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승진임용) ① 5급 및 7급 직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한다. <개정 2022.02.24.>

② 4급, 6급 및 8급 직원에 승진임용은 제4조의 해당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한 자 중에서 결원이 있을 경우에 승진임용한다.(다만, 결원수의 2배 이상일 경우에는 1항에 준하여 승진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) <개정 2022.02.24.>

제3조(승진임용을 위한 평정 및 시기) ① 5급 및 7급 직원의 승진임용을 위한 평정은 근무 성적 평가, 가점 평가로서 평정함을 원칙으로 하되, 승진시험은 실시할 경우에는 시험성적을 합산하여 평정한다. <개정 2022.02.24.>

② 승진인사평정은 정기 또는 특별 승진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시한다. 다만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의로 시기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22.02.24.>

제4조(승진임용 소요 최저년수) ① 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당해 직급에 재직하여야 한다. 다만, 조건부 임용기간은 이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22.02.24.>

1. 5급 → 4급 : 7년

2. 6급 → 5급 : 6년

3. 7급 → 6급 : 5년

4. 8급 → 7급 : 4년

5. 9급 → 8급 : 3년

② 전항의 기간에는 제5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포함한다.

③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연수를 전 1항의 기간에 가산한다.

1. 훈포장 - 2년

2. 장관이상 표창 - 1년

3. 이사장 및 총장 표창 - 1년

제5조(승진임용 및 평정의 제한)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 중에는 승진임용 될 수 없다. <개정 2022.02.24.>

1.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경우

2.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

* 강등 - 4년 <신설 2022.02.24.>

* 정직 - 3년

* 감봉 - 2년

* 견책 - 1년

3.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대학의 명예를 훼손한 자 <신설 2022.02.24.>

다만,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될 날로부터 다시 기산한다.

제6조(시험성적 평정) ① 승진 소요 최저년수에 도달한 6급 및 8급 직원은 시험성적 평정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2.02.24.>

② 필답시험의 과목은 영어, 컴퓨터를 필수로 하되 실시전에 총장이 지정하는 과목으로 한다.

③ 시험성적의 평정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.

④ 필답시험은 매과목 만점의 40% 이상 득점을 하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는 급제로 한다.

제7조(가점 평정) ① 직원이 당해 직급에서 승진임용 소요 최저년수를 초과한 후 5년까지 매 1년마다 1점씩을 가점하여 평정한다. <개정 2022.02.24.>

② 삭제 <2022.02.24.>

제8조(승진후보자 명부 작성) ① 승진후보자 명부는 시험성적 평점 100점, 근무성적 평점 100점을 각각 최고점으로 하고 이를 합산한 2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, 제7조에 의한 가점 해당자에 대하여는 그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평점점수로 한다. 다만, 명부의 총 평정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직원근무평가규정 제10조의 순위에 의한다. <개정 2022.02.24.>

②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승진인사평정표를 직군 및 직급별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. <개정 2022.02.24.>

③ 승진후보자 명부는 승진인사평정표에 의거하여 각 직군 및 직급별 고득점자 순으로 승진인원의 3배수 이내의 인원으로 작성한다. <개정 2022.02.24.>

제9조(특진) 학교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는 특진시킬 수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세칙은 2022년 02월 24일로부터 시행한다.

